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와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법률 제14035호, 2017. 3. 1. 시행)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4034호, 2017.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따른 신청료를 각각 1만 1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수수료 등을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로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9. ~ 2017.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 「특허법 시행규칙」 ”을 각각 “종전의 「특허법」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제3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 「특허법 시행규칙」 ”을 각각 “종전의 「실용신안법」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를 “단체표장등록출원료”로, “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구분마다(서비스업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지정”을 “상품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을 “단체표장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을 “단체표장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을 “단체표장등록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반려되거나”를 각각 “무효·반려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특허료”로 한다.

제8조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

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지방세법」 제28조제11호와 같은 조”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 규칙 제8조제18항”을 “이 규칙 제8조제19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3항 중 “같은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② (생략)</p> <p>③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u>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날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u></p> <p>4. (생략)</p> <p>5. 정정청구료</p> <p>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u>「특허법 시행규칙」</u> 별지</p>	<p>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 ----- ----- ----- ----- -----.</p> <p><u>다만,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 신청의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5. ----- 가. ----- ----- ----- -----.</p> <p><u>중전의 「특허법」 (2006년</u></p>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 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 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 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 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 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 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 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 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 천원

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 12.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 안 관련 수수료) ①·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 법 시행규칙」 -----

나. -----  
-----  
----- . -----  
중전의 「특허법」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 법 시행규칙」 -----  
-----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 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 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 안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생략)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5. -----

가. -----  
-----  
-----.

중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 12. (생략)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상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나. -----  
-----  
-----  
-----  
-----  
-----  
-----  
-----  
-----

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  
-----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업무표장등록출원료·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서비스업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만2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다. (생략)

2. (생략)

3. 「상표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 또는 서

1. -----단체표장등록출원료 -----

-----지정업무-----

가. -----구분마다 -----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상품의 지정-----

비스업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가.·나. (생략)

4. ~ 13. (생략)

②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권(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4. ~ 13. (현행과 같음)

②-----  
-----  
-----.

1. -----단체표장권-----  
-----  
-----  
-----  
-----  
-----  
-----  
-----  
-----  
-----  
-----  
-----  
-----  
-----  
-----.

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 13. (생략)

③ (생략)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  
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  
자인등록증, 관련디자인등록  
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  
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단  
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  
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  
증의 재교부신청료

가. ~ 다. (생략)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  
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  
등록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  
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  
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휴대  
용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지  
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증, 휴

-----  
-----.

2.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  
-----  
-----  
-----  
-----  
-----.

1. -----  
-----  
----- 단체표장등록  
증-----  
-----  
-----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  
-----  
-----  
----- 단체표장등록증-----  
-----  
-----

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의 교부  
신청료

가.·나. (생략)

2. ~ 9. (생략)

② (생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  
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  
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  
법」 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  
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  
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  
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  
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  
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  
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  
-----  
-----  
-----  
-----  
-----  
-----  
-----  
-----무효  
· 반려되거나 -----  
-----  
-----  
-----  
-----  
-----  
-----

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1.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신 설>

⑬ ~ ⑮ (생 략)

⑯ 「지방세법」 제28조제11호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에 따라 등록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할 때에는 인지세, 등록세, 수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⑭ ~ ⑯ (현행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1호와 같은 항 -----  
-----  
-----  
-----  
-----  
-----  
-----.

⑱ 제17항-----  
-----  
-----

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⑱ (생략)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8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⑤ (생략)

⑥ 제8조제14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⑧ (생략)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

-----  
-----  
-----  
-----.

⑲ (현행 제18항과 같음)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  
-----  
----- 이 규칙 제8조제19항-----  
-----  
-----  
-----.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

제출원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출원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  
-----.